

98.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견

의안번호	제194호
의결년월일	99. 7. 8 (제71회)

제의년월일 : 1999. 7. 8

제 의 자 : 부천시의회의회장

□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천시결산검사위원 선임

□ 내 용

- 98.부천시결산검사위원

소 속	성 명	생년월일	비 고
시 의 원	이 강 인	64. 7. 5	○ 기획재정위원회 위원
공인회계사	서 대 철	60. 11. 12	○ 서대철세무회계사사무소
"	정 길 영	67. 5. 5	○ 정길영세무회계사사무소 ○ 95. 96. 97. 부천시결산검사위원
"	박 해 읍	69. 3. 15	○ 박해읍세무회계사사무소 ○ 97. 부천시결산검사위원
시장추천자	이 원 재	44. 4. 30	○ 95. 96. 97. 부천시결산검사위원

□ 참고사항

관 련 법 규

○ 지방자치법

제125조(결산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(이하생략)

○ 지방자치법시행령

제46조(감사위원의 선임) ①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의 수는 시·도의 경우에는 5인 이상 10인 이하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, 그 정수·선임방법·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개정 94. 7. 6.>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<개정 94. 7. 6.>

③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.

○ 부천시결산감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

제2조(위원의 정수) 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.

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. 다만, 위원 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.

②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.

③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,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.(이하생략)

제6조(대표위원) ①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지방의회의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.(이하생략)